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0874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배진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김경만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11. 9.자 매매계약은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0,10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11. 9.자 매매계약은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¹⁾.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전해함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8. 11. 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38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28696호로 D 조합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8.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고 C는 E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E조합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80,10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

조합 이사장, E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1. 9.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근거가 된 신용보증약정과 그에 따른 대출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3개월 정도 지난 2019. 2. 12.경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봄이 옳다.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킴으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음],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은퇴 후 노년을 대비하여 전원주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이 대표로 있던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출 등에 유리한 점이 있어, 피고 C 명의로 최종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임시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모두 피고 회사와 무관한 피고 C 등의 부담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와 피고 C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이 피고 C의 딸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나마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8. 11.경 평가한 가액 480,108,000원에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이 법원의 D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을 공제하면 180,108,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해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을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0,10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원고 승소

피고 C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청구: 원고 일부승소

판사

맹현무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평택시 F

대 562㎡

2. 경기도 평택시 F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G

위 지상

일반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2층 단독주택

지층 39.25㎡

1층 110.40㎡

2층 73.56㎡

3. 경기도 평택시 H

도로 665㎡

(3번 공유자 지분 665분의 99 C 지분 전부)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2016. 7. 21.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 A 대표 B, 이하 " 피고 회사"이라함)의 부탁으로,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가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함)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19,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7. 20.로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6. 7. 21.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119,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7. 2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한차례 조건변경을 거쳐 보증원금을 107,100,000원, 채무인수에 따른 주채무자를 A에서 주식회사 A으로 각 변경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의 대출

위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9. 2.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바,

원고는 2019. 4. 10.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70,030,479원(원금 69,492,877 + 이자 537,602)을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입니다.

다. 대지급금

원고는 위 보증에 기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으로 458,53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손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약정시에, I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 정보의 사유가 발생한 때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 회사는 2019. 2.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이행하기전에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3)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2019. 2.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나. 사해행위

(1)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법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3개월전에 2018. 11. 9. 피고 C와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 C는 2018. 11. 15. 소외 E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의 확인결과, 수익자 피고 C는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피고 회사에 대여한 10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면 원고가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피고 회사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5. 악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내이사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재정상태를 잘 아는 입장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3개월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B과 피고 C는 지인인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6. 원상회복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구할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호 판결등)

나. 한편,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후 소외 E조합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5. 자 매매계약은 위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70,030,479원, 대지급금 458,538원의 합계금 70,489,017원 및 그 중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70,030,479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70,030,479원, 대지급금 458,538원을 합한 70,489,017원 및 그 중 위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70,030,479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70,489,017원 및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